

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3. 6. 30. (충청북도지사)
- 나. 회부일자 : 2003. 7. 1.
- 다. 상정일자 : 2003. 7. 10. 제1차교육사회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환경국장 심상결)

가. 제안이유

- 2002년 12월 26일과 2003년 6월 23일 각각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과 동법시행령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수행하는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재정(裁定)신청 사무를
- ★ 재정판결(裁定申判) : 위원회가 인과 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조사·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(불복시 소송제기)
-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처리토록 부여함에 따라 변경 조정된 내용을
- 우리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정에 맞게 그 운영사항과 재정신청 관련 수수료를 반영토록 개정하는 것 임.

나. 주요골자

-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,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하며(안 제2조)
- 재정신청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정하는 것 임.(안 제3조 별표)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

※ 환경분쟁조정법(개정 주요골자)

● 참고자료

-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정기능을 부여함에 따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,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, 제정의 효력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함(법 제7조제2항, 제8조제3항·제4항 및 제42조).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, 조정절차는 당해 사건의 소관 행정청의 소속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(법 제16조제2항).
- 조정절차 중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함(법 제21조 및 제22조제2항).
- 제정위원회는 제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종·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제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(법 제45조 제3항 신설).

※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(개정 주요골자)

-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물인 다리·담 등에 의한 일조침해를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함(영 제2조).
- 종전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만이 환경분쟁의 제정사무를 수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환경분쟁의 제정사무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등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사무의 범위를 조정함(영 제3조).
- 환경분쟁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요건중 본사무소의 설치요건을 없애는 등 환경단체의 조정신청을 지나치게 제한하던 요건을 완화함(영 제20조)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석규)

- 먼저, 동 조례안의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, 상위법인 환경조정분쟁 조정법과 동법시행령이 2002년 12월과 2003년 6월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 조정된 내용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임.

※ 상위법 개정 주요골자 : 별첨자료 참고

- 그런데 금회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전체적인 형식을 살펴보면

- 목적과 정의 및 해석을 정하는 총칙적 규정과 위원회 설치, 임기, 주요기능, 수당 등 예산수반을 정하는 실체적 규정, 그리고 수수료 등을 산정하는 보칙규정, 또한 기득권을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정하는 부칙규정 등
- 조항별 상호간의 부조화(기존의 조항 삭제 등)로 이해성과 명료성이 떨어지며
- 법 체계가 혼잡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 있고
- 또한 일정 형식의 법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만을 보완하여 반영하면 될 것인데
- 어떤 사유로 전체체제를 대상으로 수정 하였는지 그 개정 타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가. 수정이유

- 조항별 상호간의 부조화(기존의 조항 삭제 등)로 동 조례내용에 대한 이해성과 명료성이 떨어지고 조례 체계가 혼잡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 있어
- 이를 보완 정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제고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인원을 9인 이내로 함(안 제2조 제1항)
- 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둠(안 제2조 제2항)
-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를 2인 이상 구성토록 하며(제2조 제3항)
-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 규정을 신설하고(제3조)
-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도록 함.(제3조 제3항)
-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심사판으로 위촉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,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함.(제3조 제4항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-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- 신·구조문대비표

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발의연월일: 2003. 7. 10.

발 의 자: 이기동의원

가. 수정이유

- 조항별 상호간의 부조화(기존의 조항 삭제 등)로 동 조례내용에 대한 이해성과 명료성이 떨어지고 조례 체계가 혼잡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 있어
- 이를 보완 정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제고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인원을 9인 이내로 함(안 제2조제1항)
- 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둠(안 제2조제2항)
-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하기 위하여
 -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를 2인이상 구성토록 하며(제2조제3항)
 - 위원회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(제3조)
 -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도록 함.(제3조제4항)
-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심사판으로 위촉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,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함. (제3조제4항)

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2조 제목 중 “위원회 운영 등”을 “위원회 구성”으로 하고,
 - 안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“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.”를
 - 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, 부위원장은 북지환경국장으로 한다.”로 한다.
 - 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, 제2조에 제2항, 제3항,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“제2항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 - “제3항 당연직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제1호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
- 제2호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
- 제3호 환경관련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“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안 제3조 제1항, 제2항, 제3항은 제5조 제1항, 제2항, 제3항으로 하고, 제3조 제1항, 제2항은 개정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조의 제목과 제3항,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“제3조 제목을 “위원회의 운영”으로 하고
 - “제3조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,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.”로 하며
 - “제3조제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”로 하고
 - “제3조제3항 위원장은 충청북도소속공무원중에서 분쟁사건마다 심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,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사관 및 위촉된 관계전문가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”로 하며
 - “제4항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심사관으로 위촉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,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- 안 제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- “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를
 - “제4조(조정비용) 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행하는 알선, 조정, 재정 또는 증거보전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”
 - “제1호 위원회의 위원·심사관·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”
 - “제2호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”

- “제3호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”
- “제4호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”로 한다.

○ 안 제5조는 (개정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, 제3항을 준용하여)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“제5조 제목을 “수수료”로 하고
- “제1항 위원회에 알선·조정·재정 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”로 하며
- “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”
- “제3항 알선·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의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○ 안 제6조는 (개정안 제4조를 준용하여)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“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

○ 별표(개정 '95.10.18, 제2286호)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“수수료”를
- “수수료(제5조 관련)”으로 한다.

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환경분쟁조정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 및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운영 등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.

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제3조(수수료) ①위원회에 알선·조정·재정 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 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③알선·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의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[별 표]

수 수 료

신청별	조정가액별 수수료
앞선신청	10,000원
조정신청	1.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: 1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1.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
재정신청	1.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: 2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1.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
참가신청	1. 조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. 재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
증거보전신청	5,000원

※ 비고 :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,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제15조(규칙 제정) ①(생략)

②지방조정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3조(조정비용등) ①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.

②위원회에 대하여 조정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(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시·도의 조례)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